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안내

※기관에 따라 사업내용은 다를 수 있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 심리검사 : 종합심리평가, 정서 및 성격검사, 언어검사, 지능검사, 진로검사,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검사 등
- 심리치료 : 심리상담,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

가족기능강화 지원

- 가족기능강화사업 : 부모양육코칭 및 가족상담, 의사소통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
- 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 : 훈케어 플래너(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파견프로그램, 심리정서회복 프로그램, 기타 서비스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법원 명령 등에 따른 상담 위탁 프로그램 운영

- 임시조치 2개월 → 20시간 (10회기)
- 보호처분 6개월 → 30시간 (15회기)
- 보호처분 12개월 → 60시간 ~ 80시간 (30~40회기)
- 조건부기소유예 → 1급 40시간 (20회기)
2급 20시간 (10회기)



아이사랑콜 상담실 운영 (☎ 051-242-2000)

- 이용시간 : 월~금(10:00~18:00), 토(10:00~14:00)
- 이용방법 : 전화, 내방, 방문
- 대상 : 부모 및 양육자, 문제행동아동(도벽, 과잉행동 등) 등
- 내용 : 아동양육,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 아동관련 종합정보 제공

학대피해아동 멘토링 사업

- 아동과 1:1 멘토 · 멘티 연계
- 대학생 연계 : 학습지도 및 놀이 활동 등 다양한 경험 제공(주 1회)
- 어르신 연계 : 아동 상담, 놀이, 학습 등 다양한 체험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주 1회)

학대피해가정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 지원내용 : 검사비(건강검진, MRI, CT, 기타 초음파 활용, 심리검사 등), 수술비, 치료비, 진료 · 약제비, 입원 · 간병비, 제증명료 발급비 등
- 선정기준 :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



66 아동학대 관련 벼려야 할 편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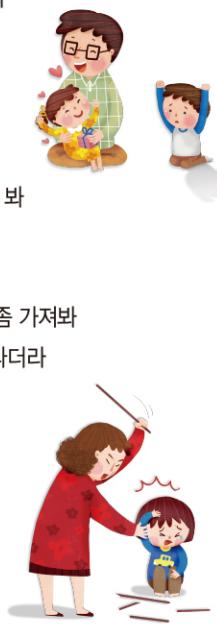
- ▶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려고?'라는 생각
- ▶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 ▶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
- ▶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라는 생각
- ▶ '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
- ▶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
- ▶ '이 정도가 아동학대?'라는 생각
- ▶ '왜 아이가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



66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난 얼마나 하고 있을까?

(세이브더칠드런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발췌)

- ▶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 ▶ 너 때문에 못 살겠다
- ▶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 ▶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 ▶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 ▶ 네 형(누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
- ▶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 ▶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 ▶ 꿈이 그 것밖에 안돼? 욕심을 좀 가져봐
- ▶ 개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 ▶ 절대 남한테 지면 안돼
- ▶ 지 아빠(엄마)랑 똑같아
- ▶ 내 말이 맞으니까 말 들어
- ▶ 어디서 말대꾸야
- ▶ 큰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니?
- ▶ 네가 뭘 안다고 그래!
- ▶ 넌 못해, 하지마
- ▶ 사내자식이 악해 빠져가지고
- ▶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간다
- ▶ 시끄러, 애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 ▶ 조용히 좀 못 해! 입닥쳐!
- ▶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 ▶ 네가 부끄럽다
- ▶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런 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 아이와 함께 있는 곳에서 가정폭력(부부싸움)을 하는 행동
- ▶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동
- ▶ 형제나 친구 등과 아이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동
- ▶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 아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이의 무단결석을 방지하는 행동



함께
부산
함께
대한민국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아동학대 NO,
희망찬 미래 YES



Q1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언제?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

누가?

- 누 구 든 지
- 신고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의심) 즉시 신고해야 함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어떻게?

- 전화 :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요령

- 아동학대 징후 인지 및 의심 사항 확인
- 아동학대신고 시 아동, 학대행위자, 학대상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 파악
- 구·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적극 협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Q2

신고의무자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25.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발견(의심) 즉시 구·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3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No.	문 항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소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00)

- 현장조사 동행지원 및 구·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통합사례회의 개최, 전문가 자문 및 슈퍼비전 지원
-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원(양육코칭 등) 및 아이사랑콜(자녀양육상담 등) 운영
- 아동·행위자 등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 신고의무자, 일반시민 등) 및 부모교육 지원
- 아동학대예방 홍보(캠페인, 전시회, SNS 홍보 등)

구·군 (현장조사 전담)

- 현장조사 : 구·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결정 :
 - 아동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연고자 등의 가정에서 보호 등
 - 학대행위자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상담 및 교육, 치료 연계 등

구·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466-1391	241-1391	440-4848	416-1391	803-1391	553-1391	607-3400	302-1391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749-2943	292-1391	518-1391	974-1391	851-1391	610-3919	310-5112	722-139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담)

-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아동 :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지원, 학습지원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지원 등
 - 학대행위자 :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족기능강화 지원, 법원 명령에 따른 상담 위탁 프로그램 운영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관할구역 :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 관할구역 : 북구, 강서구, 사상구	• 관할구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 TEL : 051) 715-1391	• TEL : 051) 711-1391	• TEL : 051) 791-1360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 소개

아동학대 NO,
희망찬 미래 YES